폭염피해자 지원제도

지원 내용

폭염 대책기간(5.20.~9.30.) 중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지원 기준 및 범위

- 신청기간
  폭염대책기간 종료일(9.30.)부터 10일 이내
-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
  (사망자) 2천만원
  (부상자) 1천만원(장해 1~7 등급), 5백만원(장해 8~14 등급)
  ※ 다른 법령으로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 안됨
  (예: 공사장 작업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재보험금 적용될 때 등)

폭염피해 판단 기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폭염피해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 노인 등 재난취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시설 또는 보호자 과실로 피해를 입는 경우
- 기타 과도한 음주 등 개인의 명백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폭염 피해 확정이 어려운 경우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문의처

각 시·군 폭염담당부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래 ❶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❷ 폭염피해 입증서류를 시·군·구 폭염피해 지원 담당부서에 제출해주세요.

❶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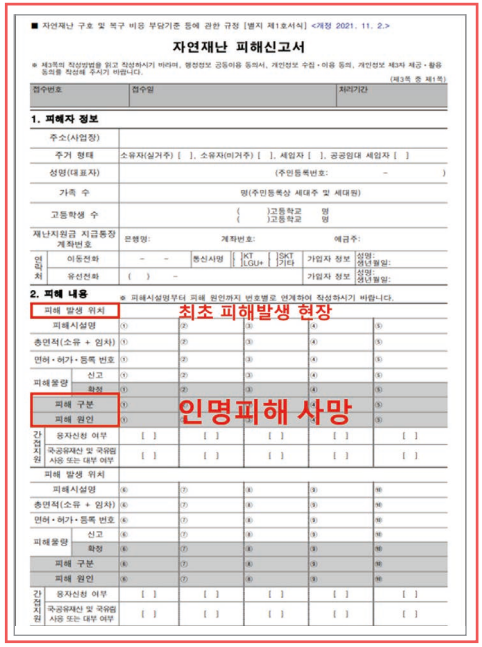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비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가족 수	명(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KT / LGU+ / SKT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최초 피해발생 현장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층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인명피해 사망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간접지원 응자신청 여부	[ ]	[ ]	[ ]	[ ]	[ ]
간접지원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층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허가·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간접지원 응자신청 여부	[ ]	[ ]	[ ]	[ ]	[ ]
간접지원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작성예

신고서 작성방법

[피해내용] 란에 최초 피해발생 현장과 인명 피해 사망이라고 기재하시면 인명피해 사망으로 접수됩니다.

❷ **폭염피해 입증서류**

부상 장해확정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처리절차

피해신고	폭염피해 사망여부 판단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자 유가족	폭염 담당부서	피해자 유가족

약 2주~한달 이상 정도 기간 소요

※ 단, 피해판단 검토에 따라 시간 지체 가능성 있음

본 리플렛은 폭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피해자 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기후재난 대비 폭염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eat wave
폭염이란?

"아주 심하게 더운 더위"
"갑작스런 심한 더위"

폭염특보 발령기준

기상청에서는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폭염특보를 발령

폭염 주의보 33℃

일 최고체감온도가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폭염 경보 35℃

일 최고체감온도가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폭염특보는 날씨누리(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폭염재난 위기경보 수준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폭염특보 구역 178개 중 일부(10%이상), 지역적(40%이상), 광역적(60%이상), 전국적(80%이상) 기준에 따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발령

관심 Blue	폭염 대책기간(5.20.~9.30.)
주의 Yellow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계 Orange	지역적(특보구역의 40%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심각 Red	지역적(특보구역의 40%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일부지역(특보구역의 10%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광역적(특보구역의 60%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지역적(특보구역의 40%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전국적(특보구역의 80%이상)으로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광역적(특보구역의 60%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기간 노출될때..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등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종류 및 주요증상

열사병 (가장위험)	•중추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 땀 날 수 있음 •심한두통, 오한, 빈맥, 빈 호흡, 저혈압 •메스꺼움, 현기증
열경련	•근육경련(종아리, 허벅지, 어깨 등)
열실신	•실신(일시적 의식소실)/어지러움증
열탈진	•땀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40℃)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열부종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열발진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 (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

〈폭염 시 행동요령〉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

술, 카페인 음료보다 **물 많이 마시기**

주변의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부 살피기**

건설현장이나 농어촌 등 **실외작업 시 자주 휴식 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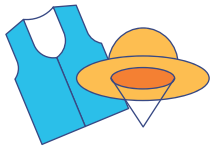

야외활동 자제, 꼭 해야할 경우 **가벼운 옷차림, 넓은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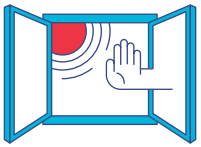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 불도록 환기하기**

무더위쉼터
주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아동센터 등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 피하기

위치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